

日本の 保險料率算出機關

I.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 設立背景

제2차 세계 대전후 日本의 經濟狀況은 住宅事情의 惡化, 生産設備의 격감,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매우 어려운 狀況이었으며 損害保險會社의 經營狀態도 資産狀況의 惡化, 무절제한 契約引受 및 빈약한 소방시설에 따른 火災保險 損害率의 惡化 등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日本의 損害保險會社는 적정한 料率算出과 健全經營의 必要性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한편 戰後 日本의 政治, 經濟는 연합국의 간접통치하에 있어 保險制度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獨占禁止法의 시행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獨占禁止法은 經濟民主化 추진의 하나로서 1947년 4월에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獨占禁止法에서는 운수, 전력, 가스, 금융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適用除外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適用對象이 되기 때문에 損害保險도 예외가 될 수 없어

保險業法 제11조의 통제협정은 獨占禁止法에 저촉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保險産業이 獨禁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保險料率의 自由化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過當競爭에 의해 保險會社의 經營이 더욱 더 惡化되어 保險金의 支給不能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契約者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保險制度 자체의 存立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령군 사령부, 정부, 업계 등이 절충한 결과 保險業法 제11조를 삭제하는 대신에 별도로 料率算出團體를 설립하기로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1948년 7월 29일에 미국의 制度를 모방하여 料率算出團體法을 제정, 공포하여 料率算出團體가 산출하는 料率에 대해서는 獨禁法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同年 11월 1일에 損害保險料率算定會가 설립되어 料率算出業務를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립당초에는 算定會가 산출한 料率이 大藏大臣의 認可를 얻어도 會員社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1951년 料率算出團體法을 개정하여 會員社에 대하여 算出料率에 대한

遵守義務를 부과하게 되었다.

2. 設立目的

算定會의 設立目的을 보면 保險事業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保險契約者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정한 損害保險料率을 산출하여, 大藏大臣의 認可를 획득하고 그 認可保險料率을 회원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算定會의 개요

가. 會員

算定會는 會員인 損害保險會社에 의해 구성된다. 會員이 될 수 있는 會社는 법률에 의해 면허를 받은 日本의 損害保險會社 및 日本에서 영업을 하는 外國損害保險會社이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다. 會員의 현재수(1990년 4월 현재)는 內國會社 24개사, 外國會社 29개사, 합계 53개사 이다.

나. 主要業務

1) 保險料率의 算出과 大藏大臣에 대한 認可申請
算定會의 主要業務中 하나는 保險料率의 算出과 그 認可申請이다.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은, 算定會가 산출할 保險料率이 合理的이며 妥當한 것일 것, 또한 不當하게 差別的이지 않을 것과 算定會가 保險料率을 산출할 때는 그 保險料率에 대해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정해져 있다. 算定會는 매년 일정방식에 의한 料率水準의 檢證을 행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現行料率에 대해 料率水準의 조정과 체계의 합리화를 행한다. 여기에는 각종의 統計資料, 都市調査資料 기타 日常業務에 의해 축적된 다수의 資料가 기초가 된다.

算定會가 새로운 保險料率을 산출했을 때는 大藏大臣에 認可申請의 수속을 밟고 그 엄정한 심사를 받는다. 또한 認可申請後 1주내에 算出한 保險料率에 관한 사항을 官報 또는 일간신문(日本經濟新聞)에 공고한다.

算定會가 산출한 料率에 대해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았을 때는 會員에게 認可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會員은 그 認可된 保險料率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算定會 料率은 다음의 保險種目に 적용되고 있다.

- 火災保險 ……… 普通火災保險
- 住宅火災保險
- 住宅綜合保險
- 店舖綜合保險
- 住宅金融公庫特約附火災保險
- 地震保險 ……… 地震保險
- 傷害保險 ……… 普通傷害保險
- 交通事故傷害保險
- 家族交通傷害保險
- 海外旅行傷害保險
- 家族傷害保險

2) 保險約款의 작성 및 기타 업무

算定會는 上記外에 保險料率의 算出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業務도 병행한다.

- 損害率의 算定, 危險의 測定, 기타 保險料率의 산출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 保險約款 및 引受諸條件의 조사, 연구 및 작성
- 契約對象物件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保險統計의 作成
- 損害의 調査 및 損害의 防止, 輕減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資料의 공개

算定會는 算定會 料率에 관련된 각종 料率表와 料率算出을 위한 統計資料 등을 구비하여 일반에게 閱覽하도록 한다.

다. 任員

理事는 21명 이내로서 그중 會員의 대표자는 6명이내이고 監事는 3명이내로서 1명은 會員의 대표자이고 나머지 理事와 監事は 會員의 대표자 이외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會員總會에서 선출되며 理事長은 理事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專務理事, 常務理事는 理事의 호선에 의해 會員의 대표자 이외에서 선출한다.

라. 算定會의 機關과 組織

1) 機關

① 會員總會, 理事會

總會는 算定會의 定款 및 規則의 제정 또는 변

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算定會의 理事, 監事를 선임하는 기관으로 會員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理事會는 算定會 料率의 算出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21명 이내의 理事로 구성되어 있다.

② 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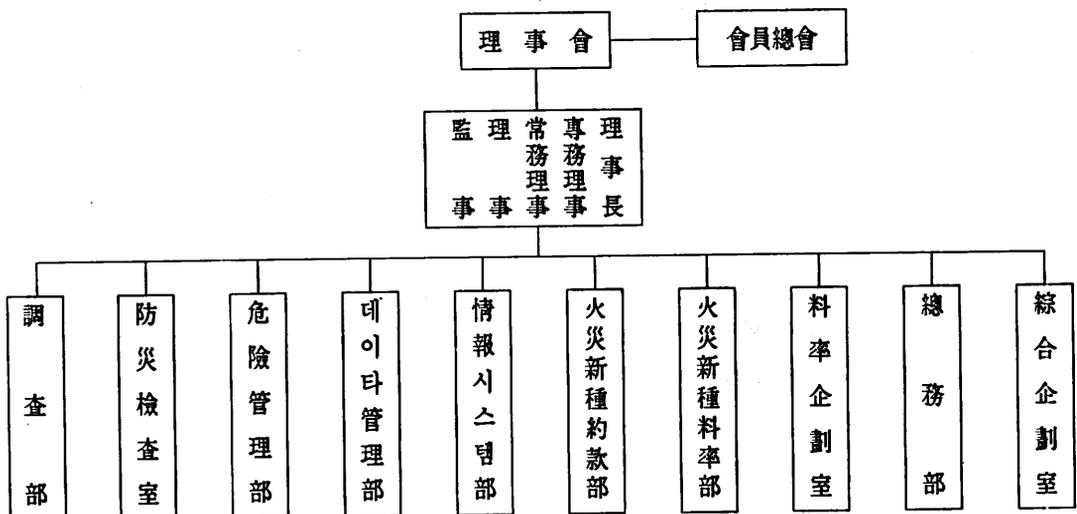
定款에 정한 事業에 대해 會員의 의견을 접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위원은 會員의 임직원 중 理事長에 의해 위촉된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3개의 위원회가 있다.

- 火災保險料率委員會
- 地震保險料率委員會
- 新種保險料率委員會

2) 組織

算定會의 組織은 아래 표와 같다.

損害保險料率算定會의 組織



4. 損害保險料率算定會의 料率算出 概要

가. 損害保險料率

損害保險의 料率은 保險金額¹⁾에 대한 保險料의 比率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保險金額 1단위당 (보통, 火災保險 및 傷害保險은 천엔)에 대한 保險料의 比率로 표시되고 있고 保險期間이 1년단위에 대해서는 年率, 1개월 단위에 대해서는 月率로 되어 있다. 따라서 保險契約者가 개개의 계약에 대해 지출하는 保險料의 액수는 契約保險金額에 保險料率(火災, 傷害保險은 천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나. 損害保險料率의 구성

保險料率은 대별하면 危險保險料率部分(또는 純保險料率部分)과 附加保險料率 部分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危險保險料率이라는 것은 장래 지급되어야 할 保險金²⁾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附加保險料率이란 保險經營上 필요한 事業費에 해당되는 부분과 일정한 이윤을 합제한 것을 말한다. 附加保險料率中 事業費에 해당되는 부분은 保險會社의 경비부분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損害保險料率을 산출할 때에는 이러한 危險保險料率部分과 附加保險料率部分에 대해 各保險種目마다 계산하게 된다.

다. 危險保險料率의 算出

保險契約者가 부담하는 保險料를 공평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料率은 危險의 大小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危險保險料率部分의 산정에 있어서 우선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에 의해 保險集團을 구분

한다.

火災保險을 예로 들면 住宅物件(住居專用), 一般物件(店舖 및 小作業場), 工場物件 및 倉庫物件 등 4가지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 大別된 4집단에 대해서는 物件의 所在地, 構造, 職業, 作業工程, 주변의 상황등의 질적 요소나 면적, 규모등의 양적 요소마다 다수의 유형집단으로 세분한다.

危險保險料率은 이같이 세분화된 保險集團마다 집계된 保險實績의 데이터를 기초로 各集단의 실태를 반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危險保險料率算出의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火災工學, 地震工學, 安定工學등을 기초로 保險數理에 따르는 해석적, 분석적 방법에 의한 검토가 가미되는 것도 있다.

라. 附加保險料率의 算出

附加保險料率部分의 算出은 會員社가 매년 事業年度의 결산시에 작성하는 損益計算書에 기초하여 加重平均方式에 의해 행하고 있다. 保險會社의 保險事業經營에 관한 결산처리는 大藏大臣의 감독 아래에서 保險業法, 同施行規則 및 大藏省 銀行局의 제동보, 또한 상법, 기업회계원칙 등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損益計算書에 계상되고 있는 社費는 各保險種類別로 損害調査費, 營業費, 一般管理費라고 하는 계정과목마다 人件費 및 物件費를 그 내역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種目마다 社費의 원가계산은 損益計算書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마. 損害保險料率水準 檢證과 料率改正

損害保險料率水準 檢證은 算定會가 料率을 산출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 정해지는 금액이다.

2) 보험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 담보금으로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 시점에서 예정한 料率水準을 그 料率에 의해 영업한 결과의 실제 실적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다. 이 檢證은 매년 정기적으로 各保險種目마다 행하며 그 결과, 料率水準에 과부족이 생기면 개개의 料率의 개정이 행해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料率水準의 檢證은 料率의 合理性, 妥當性, 公平性を 유지하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II. 自動車保險 料率算定會

1. 設立背景

1948년 7월에 제정된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에 의해 1948년 11월에 損害保險料率算定會가 설립되어 自動車保險을 비롯한 損害保險料率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自動車の 대량보급에 의한 自動車保險 業務量의 증대에 따라 自動車保險 料率算定業務의 合理化 및 圓滑化를 도모하기 위해 1964년 1월 8일에 自動車保險 料率算定會가 損害保險料率算定會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설립되었다.

한편 1955년 12월에 발족한 自動車 損害賠償責任保險의 保險金 請求에 대한 공정한 損害調査를 행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인 共同査定事務所가 창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自算會가 설립됨에 따라 이 기구도 自算會에 통합되어 自算會 査定事務所로 되었다가 1972년 1월에 自算會 調査事務所로 개칭되었으며 1990년 4월 현재 전국에 70개소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2. 設立目的

自動車保險 및 自動車 損害賠償責任保險事業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保險契約者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保險料率을 산출하여 大藏大臣의 認可를 취득하며, 認可料率을 會員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 및 自動車 損害賠償責任法の 취지에 따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自算會의 概要

가. 會員

保險業法에 의해 면허를 받은 損害保險會社 및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에 의해 면허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는 會員으로 가입할 수 있다. 會員에는 普通會員과 特別會員이 있으며 特別會員은 理事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會員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이며 會員은 회비를 부담한다. 自動車保險에 있어서는 保險料率의 사용료로서 수입보험료의 비율에 의해 自算會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自賠償保險에 있어서는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회비로 부담한다. 또한 會員은 自算會가 산출한 料率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自算會의 主要業務

(1) 取級保險種目

1)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對人賠償責任을 담보하는 強制保險)

2) 自動車保險(對人賠償責任, 對物賠償責任, 車輛損害 및 搭乘者傷害를 담보하는 任意保險)

(2) 事業內容

自賠償保險 및 自動車保險에 관한 다음과 같은 事業을 수행한다.

1) 保險料率의 算出에 관한 業務

① 保險料率의 算出 및 大藏大臣에 대한 認可申請

- ② 損害率 및 危險의 측정, 기타 保險料率의 算出에 關한 필요한 調查研究 및 資料의 蒐集
- ③ 保險約款 및 引受條件의 調査 및 연구
- ④ 被保險物件의 평가에 關한 調査 및 연구
- ⑤ 保險統計의 작성
- ⑥ 損害의 調査 및 損害防止, 輕減에 關한 調査 및 연구
- ⑦ 기타 自算會의 목적 達成上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自賠償保險에 關連된 損害調査에 關한 業務
다. 任員

理事는 21명 이내로서 그중 會員의 代表자는 6명 이내이고 監事는 2명 이내로서 1명은 會員의 代表자이고 기타의 理事와 監事는 會員의 代表자 이외에서 選任한다. 임원은 會員總會에서 選출되며 理事長은 理事의 호선에 의해 選任된다. 副理事長,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는 理事의 호선에 의해 會員의 代表자 이외에서 選출된다.

라. 會員總會, 理事會

會員總會는 通常總會 및 臨時總會가 있으며 政 關 및 규칙, 예산 및 決算, 기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부의한다. 通常總會는 매년 7월에 소집된다. 理事會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理事長이 소집하며 保險料率의 算出, 기타 重要사 項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마. 會計

自算會의 경비는 自動車保險에 關한 경비와 自賠償保險에 關한 경비로 구분 계산되고 있다. 自動車保險의 경비는 會員이 납부하는 회비에 의해, 自賠償保險의 경비는 自賠償保險에 의한 수입으로 지출한다.

바. 組織

自算會의 組織은 <별표>와 같다.

4. 自算會의 保險料率算出 概要

가. 保險料의 구성

自賠償保險 및 自動車保險을 계약할 때 납입하 는 요금이 保險料이다. 保險料는 사고가 발생한 때 保險金의 지급에 應당되는 純保險料部分과 保險會 社의 제경비에 應당되는 附加保險料部分으로 구성 된다.

나. 保險料率의 算出

純保險料는 일반적으로 「事故率×平均損害額」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事故率과 平均損害額을 구 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손해실적이 基礎資料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會員社로부터 지 속 적으로 소정의 統計項目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이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각종의 기초 保險統計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 交通事故統計, 經濟統 計 등의 外部資料를 가미하면서 統計的 方法에 의 해 장래를 예측하여 純保險料를 산출한다. 附加保 險料는 會員社의 新契約費, 維持費, 損害調査費 등 을 분석, 調査하여 산출한다.

다. 保險料率의 認可申請

이와 같이 保險料率은 재관적, 과학적으로 산출 되고 自算會는 그 산출한 料率에 대하여 대장성 에 認可를 신청함과 동시에 공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認可를 받은 保險料率은 算定會料 率이라고 부르고 會員社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라. 保險料率의 檢證

料率算出上의 결정요인은 交通事故發生狀況등 社會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自算會는 항상 결

정요인의 변화를 추적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保險料率의 妥當性에 대해 檢證을 행하고 필요하면 保險料率의 改正을 행하는 등 항상 실정에 맞는 適正水準의 料率을 산출, 조정한다.

5. 自算會의 細部業務內容

가. 料率部의 業務

- ① 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
- ② 大藏大臣에 대한 保險料率의 認可申請에 관한 사항
- ③ 料率制度에 관한 分析·調査, 企劃·立案
- ④ 保險統計의 작성에 관한 企劃·立案 및 管理
- ⑤ 保險料率의 算出方法 및 檢證方法에 관한 分析 調査, 企劃·立案
- ⑥ 會員會社의 料率遵守에 관한 사항
- ⑦ 團體契約의 管理
- ⑧ 「기타 保險料率」의 管理
- ⑨ 기타 保險料率에 관한 사항

나. 約款·制度部의 業務

- ① 自賠法 및 기타 關係法令의 研究
- ② 保險約款 特約條項 및 保險制度의 改善에 관한 調査研究
- ③ 商品의 開發에 관한 調査研究
- ④ 事業方法書, 契約取扱規定의 作成 등 會員社로 부터 위탁받은 業務의 운영
- ⑤ 諸外國의 交通事故 補償制度 및 自動車 保險制度에 관한 調査研究
- ⑥ 기타 約款制度에 관한 사항

다. 損害調査業務部의 業務

- ① 自賠責保險 및 自動車保險의 損害調査에 관한 諸制度(醫療費의 適正化 및 後遺障害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調査研究, 企劃·立案

- ② 自賠責保險 損害調査關係規定의 제정
- ③ 自賠責保險 및 自動車 對人賠償保險의 支給基準에 관한 調査研究
- ④ 自賠責保險에 관한 訴訟事案(醫療費 後遺障害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管理
- ⑤ 自賠責保險 및 自動車保險의 身體傷害에 관한 諸統計(醫療費 後遺障害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企劃·立案 및 管理
- ⑥ 交通事故 損害賠償判例에 관한 調査 및 資料編輯
- ⑦ 車輛保險 對物賠償保險의 査定處理에 관한 실태 내지는 保險事故車의 수리비 실태의 調査에 관한 企劃·立案 및 管理

라. 醫療調査部의 業務

- ① 醫療費 調査 및 後遺障害 調査·認定의 적정화에 관한 調査研究, 企劃·立案
- ② 診療報酬基準에 관한 調査研究, 企劃·立案
- ③ 醫療費 後遺障害關係 諮問醫 制度 및 再診斷病院制度의 企劃·立案
- ④ 醫師會 등 關係諸團體에 관한 사항
- ⑤ 醫療研究·연수에 관한 사항
- ⑥ 自賠責保險의 醫療費·後遺障害에 관한 소송사안의 管理
- ⑦ 醫療費·後遺障害에 관한 諸資料의 수집·정비 및 관리
- ⑧ 기타 醫療費 後遺障害 적정화에 관한 사항

마. 調査事業本部의 業務

- ① 지구본부, 조사사무소 및 지소(이하「調査事務所 등」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企劃·立案 및 實施(다른 부에 속한 것을 제외한다.)
- ② 調査事務所 등의 예산안의 책정
- ③ 調査事務所 등의 員계획에 관한 企劃·立案에

- 의 참가
- ④ 調査事務所등의 기능·조직, 설치·개폐에 관한 企劃·立案에의 참가
 - ⑤ 調査事務所등 종업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企劃·立案 및 實施에 관한 사항
 - ⑥ 管理統計의 작성에 관한 企劃·立案 및 管理
 - ⑦ 調査事務所등의 OA業務의 운영 관리 및 지도
 - ⑧ 調査事務所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획·입안 및 계규칙의 제정, 개폐
 - ⑨ 自賠償保險의 損害調査에 관한 조회·품의·심사·재심사·不服審査事案등(醫療費 및 後遺障害認定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회답·지시
 - ⑩ 自賠償保險의 不正請求事件 및 過誤納事案의 管理 내지 情報交換制度의 運營·管理
 - ⑪ 調査事務所등의 醫療費 調査에 관한 운영·관리 및 지도
 - ⑫ 自賠償保險의 損害調査에 관한 諮問醫, 諮問辯護士의 위촉 내지 再診斷病院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⑬ 정부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하 「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의 運營·管理 내지 保障事業請求事案에 관한 심사·지도 및 保障事業請求事案의 처리
 - ⑭ 調査事務所등의 業務運營의 監査, 指導
 - 바. 정보시스템부의 業務
 - 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管理 내지 그 구성 계획의 企劃·立案
 - ② 네트워크의 계획, 설계 및 도입 내지 네트워크 서비스의 管理
 - ③ 自算會 전반에서 담당하는 컴퓨터처리용 데이터 管理

- ④ 데이터 베이스의 管理
- ⑤ 컴퓨터의 運行管理
- ⑥ 諸統計의 作成·檢證 및 컴퓨터 適用業務 시스템의 개발, 운용 내지 그것에 관한 정보화일의 管理
- ⑦ 컴퓨터교육의 企劃·立案 및 實施
- ⑧ 사무처리의 OA화에 관한 企劃·立案 및 그 시스템의 開發, 運用
 - 사. 統計事務所의 業務
 - ① 自賠償保險 및 自動車保險에 관한 統計 데이터(이하 「統計데이터」라 한다.)의 수집·정비 및 관리
 - ② 統計데이터의 보고·심사·보정에 관한 企劃·立案 및 이에 관한 諸規則의 작성
 - ③ 統計데이터 보고용등의 테이프의 授受

Ⅲ. 日本船舶保險聯盟

1. 設立背景

戰後 日本의 船舶保險은 當初 損害保險協會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1948년 11월 1일에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에 의해 損害保險料率算定會가 설립되어 他保險種目과 함께 船舶保險도 同會에서 운영되었다.

1951년 同法이 개정되어 船舶保險은 大藏大臣으로부터 認可를 받은 料率을 운용하는 制度(認可料率制度)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 후 日本 海運業界는 정부의 造船計劃에 의해 1955년 이후 船腹量이 증대됨에 따라 船主間에 격차도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획일적이며 탄력성이 없는 認可料率制度는 船舶保險事業의 정상적인 운영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船舶保險에 대한 세부적인 料率制度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도 船舶保險料率에 대하여는 정부의 認可制度를 채택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船舶保險料率制度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와같은 상황에 따라 1962년 保險事業者間的 協定을 기초로 하여 料率을 산출하는 協定料率制度로 변경하기 위해 保險業法 및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의 일부를 개정하여 損害保險會社가 행하는 船舶保險에 관한 料率協定을 포함한 각종 共同行爲에 대해서는 獨占禁止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2. 設立目的

회원인 損害保險會社가 船舶保險을 인수함에 있어 引受條件의 決定 및 改善, 공정한 料率의 算出 및 적정한 損害調査에 대하여 협조함으로써 日本船舶保險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일본의 海運業者, 造船業者등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船舶聯盟의 概要

가. 會員

保險業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船舶保險事業의 免許를 받은 損害保險會社로 구성된다.

나. 主要事業

- (1) 船舶保險料率의 算出과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2) 船舶保險 引受條件의 決定 및 약관의 작성과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3) 船舶保險統計의 작성 및 자료의 수집

(4) 船舶保險의 危險消化 方案 研究

(5) 船舶保險에 관한 損害의 調査와 損害防止, 輕減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기타 船舶聯盟의 목적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任員

會長, 副會長, 專務理事 또는 常務理事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理事와 監事 2명을 둔다.

라. 機關과 組織

(1) 機關

最高議決機關인 會員總會가 있으며 그 밑에 全會員會社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契約委員會 및 調査委員會와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契約常任委員會 및 調査常任委員會가 있으며 이들 委員會의 하부기관으로 전문적인 特別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2) 組織

船舶聯盟의 內部組織은 다음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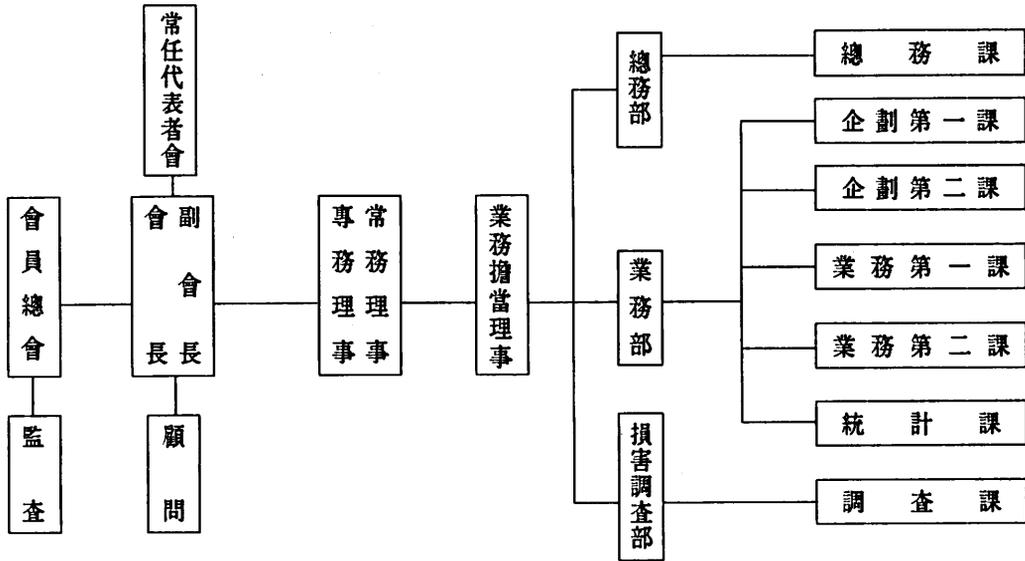
마. 經費

船舶聯盟의 事業은 會員會社가 각출하는 會費에 의해 운영한다.

4. 船舶保險 協定料率의 運營方法

개개의 船舶에 적용되는 料率은 船舶保險의 각종 中목코드에 契約年度初에 정해진 전반적인 料率水準에 기초하여 그 船舶의 用途, 規模, 船齡, 擔保範圍, 保險價額, 航路, 契約者의 契約量과 損害率 등에 따라 料率案을 작성하여 그것을 船舶聯盟의 委員會에서 심의 결정한 후 會員會社가 계약자와 절충하여 부보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의 전반적인 料率水準 및 중요한 保險條件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船舶聯盟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

日本船舶保險聯盟의 組織



한 제반통계를 분석하고 海外料率의 動向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日本船主協會, 日本造船工業協會 등의 需要者團體의 요망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船舶保險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 船籍의 일반 상선에 대한 料率水準은 매년 船舶聯盟과 日本船主協會가 交渉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있다.

IV. 日本機械保險聯盟

1. 設立背景

일본의 損保業界는 1950년 9월부터 技術保險의 先驅者인 靑靑 再保險會社의 協力하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1956년 5월에 일본의 8개 損害保險會社가 機械保險 및 組立保險의 事業免許를 취득하여 再保險의 引受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들

保險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機械保險聯盟이 1956년 5월 12일에 창립되었다.

2. 設立目的

會員이 영위하는 機械保險 및 組立保險事業의 합리적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技術的 援助를 행하고 동시에 再保險의 共同處理와 諸般統計의 작성등을 통하여 器械保險및 組立保險의 健全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機械保險聯盟의 概要

가. 會員

會員은 保險業法 제1조 제1항의 規定에 따라 機械, 組立保險事業의 免許를 받은 保險會社가 되는데 1990년 4월 1일 현재 23개 原受損害保險會社와 1개 再保險會社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1개의 國內損害保險會社와 8개의 外國損害保險會

社가 準會員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主要事業

(1) 機械, 組立保險 一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제공

(2) 機械, 組立保險의 계약 및 損害에 관한 調査 및 鑑定

(3) 機械, 組立保險 再保險의 共同處理

(4) 기타 機械保險의 보금, 발달에 기여하는 업무

다. 任員

會長, 專務理事 각 1명, 理事 7명 이내, 監事 2명 이내를 둔다. 다만 會長은 會員會社의 代表者이어야 한다.

라. 資金의 釀出 및 分擔

會員은 聯盟의 資金으로 總會가 정한 금액을 각 출하며 聯盟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정한 비율에 따라 分擔한다.

마. 機構

1990년 4월 1일 현재 機構表는 다음과 같다.

日本 機械保險聯盟의 組織

